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수신 황인엽 (주식회사케이엔엘) 귀하 (우39434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1안길 17 (인
의동) 104호)
(경유)

제목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체불 임금등 · 사
업주 확인서(소송 제기용)를 발급합니다.

붙임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1부.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근로감독관 이지훈

수석근로감독관 백지영

과장

전결 2026. 6. 10.
최성우

협조자

시행 노동기준조사1과-59773 2026. 6. 10. 접수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1035 정부대구지방합동
청사) /

전화 053-605-9193 전송 0503-8803-0518 / vcxz9812@korea.kr / 비공개(5)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 퇴직자용
[☐] 재직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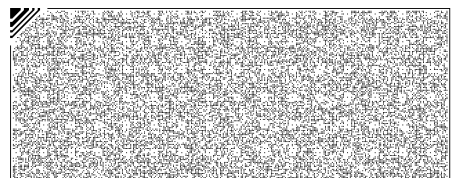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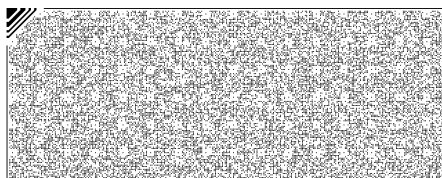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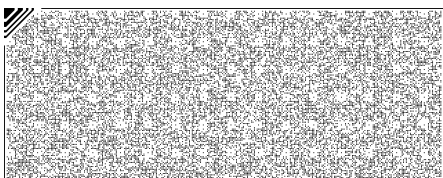
(앞쪽)

발급번호 4010-2026-1161

접수일 2026.05.27

① 체불 근로자	성명		황인엽		주민등록번호		830113-1241811		
	주소		(39434)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1안길 17 (인의동) 104호						
	근무기간		2025.10.01~2026.01.15		임금액 (재직자인 경우)		시간당 ()원		
	근로계약기간 (재직자인 경우)		[] 1개월 이상 [] 1개월 미만						
	임금산정기간		1~31		정기임금지급일		5		
	비고								
② 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주식회사케이엔엘		사업자등록번호		671-87-02359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170111-0840373		
	실제 대표자	성명	김광석		주민등록번호		760306-1901123		
		주소	(43008)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64길63 105동 503호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ZOOM 파크)						
	명의 대표자	성명	김광석		주민등록번호		760306-1901123		
		주소	(43008)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64길63 105동 503호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ZOOM 파크)						
	사업장 소재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65길 16 101호			상시 근로자수		2	
	체불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건설공사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사업의 종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사업기간		2022.01.01~		
	비고								
③ 연대 책임자	적법한 직상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상위 수급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발급한 확인서를 사용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8,901,000 원						
	최종 3개월 (3년)분	구분 2025.10.16 ~ 2026.01.15	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자인 경우)
		계	8,901,000	8,901,000				
		최종1개월 (1년)분	5,997,774	5,997,774				
		최종2개월 (2년)분	2,903,226	2,903,226				
		최종3개월 (3년)분	0					
	비고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상여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합계	8,901,000	8,901,000						
2026년01월 (2026.01.01~2026.01.15)	2,901,000	2,901,000						
2025년12월 (2025.12.01~2025.12.31)	6,000,000	6,000,000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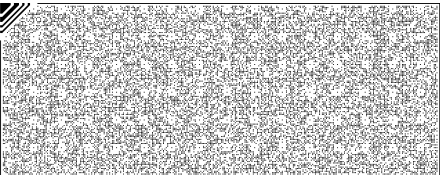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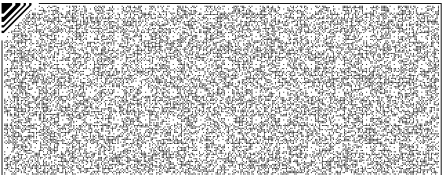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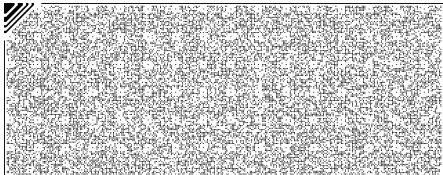
확인 근거	사업주 조사	[✓]사업주 조사 실시 ([] 사업주 전부 인정 [] 사업주 일부 불인정 [✓]사업주 전부 불인정) []사업주 조사 미실시						
	그 밖의 자료	[]있음 () [✓]없음						
	비고	사업주는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아닌 베트남 국적 법인 K&L VN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사용 용도	구분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기타()						
	신청부수	1						
	비고							

확인자	근로감독관 : 이지훈 (전화번호: 053-605-9193)		
첨부 서류		참고	수사중
진정등 제기일	2026.01.26	최초 발급일	2026.06.10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합니다.

2026.06.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간이 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지원대상	구분	퇴직자	재직자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근로자가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지원내용	퇴직자		재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최대 1,000만원 상한(임금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700만원 상한
신청절차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지급요건 확인→(부)지급 통지		
필요서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및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및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비 고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지원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 체불		
	지원내용	(용자금액) ①재직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액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천만원 한도), ②퇴직자는 최종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용자금리/조건) 연 1.5%/1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 별도 담보제공 없음(공단의 신용보증지원, 보증료 연 1% 별도)		
	신청절차	용자 및 보증신청 → 용자결정 →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 용자실행(기업은행)		
	필요서류	▶ 건설일용근로자: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③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등 ▶ 건설일용근로자 와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체불확인서(재직자에 한함) ②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③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등(재직자에 한함)		
	비 고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www.workdream.net)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 지원(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 않음)		
	구조절차	구조신청 → 사실조사 → 구조결정 → 구조계약 체 결 → 소송수행		
	필요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비 고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지역번호+132		